

현장실습 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1994. 3. 1.
개정 1997. 6. 1.	개정 1998. 6. 1.
개정 2000. 9. 1.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의거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투철한 직업관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장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직업 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방향) ① 전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공분야에 취업을 위한 적응력 함양과 기술습득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③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회 각 분야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한다.

④ 본 규정은 현장실습 의무대상 계열·학부(과) 재학생의 현장실습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의무대상학과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31.>

⑤ 본 대학의 현장실습 의무대상 계열·학부(과)의 학생은 재학 중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다. 단, 정규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

⑥ 현장실습 의무대상학부(과) 이외의 계열·학부(과) 학생에 대하여는 현장실습교과목을 권장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3.31.>

⑦ 현장실습 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3.31.>

제3조(실습기간) ①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는 4주(160시간 이상)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 <신설 2013.7.1.> <개정 2017.9.1.>

② 삭제 <2014.3.1.>

③ 3년제는 2학기 이상, 2년제는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신설 2013.7.1.> <개정 2016.7.28.>

④ 삭제 <2016.7.28.>

제4조(방법)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 및 실습시기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항의 1과 같다.

-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3인 이상인 산업체
-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④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 ⑤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체 <개정 2017.3.1.>

[전문개정 2013.7.1.]

제6조 <삭제 2016.7.28.>

제7조(실습시기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은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수업으로 수강 신청한 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7.28., 2017.3.1.>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국내·외 현장실습은 2개의 과정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구분	과정 개설	인정 학점	실습 요건
단기 현장실습	계절수업 (하계, 동계)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중기 현장실습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②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학부(과)는 산업체 선정과 현장실습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제1항의 시기를 고려하여 게시된 지원센터의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의 학과장은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업체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④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⑤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1주 기준 1일의 휴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현장실습 수행 중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실습을 할 수 없을 경우, 산업체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

제 3 장 실습생 배정·교육 및 평가

제8조(실습생 배정) ① 업체별 실습생 배정은 지도교수가 하고 학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현장실습업체 및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학협력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3.1., 2015.8.31.>

② 산학협력처장은 전항의 통보내용에 의거 산업체별 배정(과건) 학생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습생을 파견한다. <개정 2014.3.1., 2015.8.31.>

제9조(사전교육) ① 현장실습에 임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삭제 <2013.7.1.>

③ 사전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학과와 현장실습 내용과의 관련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
3. 인간관계 및 직장예절

제10조(실습생 준수사항) ① 실습생은 생산 조업인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은 수업의 과정이므로 현장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신분을 유지하여 언어나 행동, 복장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주나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한다.

④ 실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로 연락을 하고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⑤ 배정 받은 실습업체 및 장소를 학생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할 경우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고 실습기간을 무효로 한다.

⑥ 현장에서의 실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기준은 일주일이상으로 한다.)

제11조(각종서식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6.7.28.]

제12조(실습평가) 현장실습 성적 평가는 산업체의 현장지도 책임자가 평가한 실습완료인정 및 평가서와 “실습일지” 및 교수의 순회지도 등을 종합하여 다음 평가 기준에 의거, 절대 평가한다.

① 현장실습 평가 기준표

가. 평가서(산업체) : 60점

나. 실습일지 : 10점

평가항목	A	B	C	D
실습일지	10	8	6	4

다. 기타 (순회지도 교수평가 등) : 30점

평가항목	A	B	C	D
기타(순회지도등)	30	25	20	15

제13조(성적평가 및 제외대상) ① 현장실습의 성적은 현장실습 평가 기준표에서 60점 이상인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하고 평가를 S(success)로 한다. <개정 2013.7.1., 2016.7.28.>

②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1., 2016.7.28.>

제14조(성적제출) 현장실습 성적 채점표는 학과장이 작성하여 해당학기 종료후 일반 성적표와 같이 처리한다.

제15조(순회지도)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당해 업체에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회지도 후 “순회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7.28.>

제16조(보험가입) 현장실습에 임하는 당해 학생들은 현장실습 시 각종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7.28.>

제18조 삭제 <2016.7.28.>

제19조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8.>

제 5 장 실험실습비 <신설 2016.7.28.>

제20조(실험실습비 지급)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은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과에서는 해당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현장실습 계획과 평가 <신설 2016.7.28.>

제21조(현장실습 계획과 평가) ① 각 학과는 학과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각 학과는 학과에서 시행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한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인정의 특례) 학점 인정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인정의 특례) 2016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